

天主教全國敎導師牧協議會
資料 第1輯

cpa1.31

7

136 30

간헐이들에게 빛을

간헐이들에게 빛을

cpa1.31

전국교도시목협의회

전국교도시목협의회

1992. 11. 11~12

天主教全國教導師牧協議會

資料 第1輯

간헐이들에게 빛을

전국교도사목협의회

1992. 11. 11~12

취 지 문

“스스로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는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1요한 2,9-10)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에로의 소명'을 간직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순한 말마디는 험난한 인간사 안에서 부딪히는 고통의 의미와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조개어 배푸는 나눔의 의미를 씩없이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로서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적 사랑을 우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온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처받고 고통중에 있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 왔는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교회의 현실 토대 위에서 2000년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교도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도사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도사목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현실과 아픔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만이 아닌 마음과 사랑이 깃든 행실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교도사목의 진실된 복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그리스도 말씀 실천을 재고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화방법의 개발과 폭넓은 사랑 나눔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의 일용 할 양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어느 한 죄인의 무거운 죄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그들의 고통과 번민에 얼마나 동참해 왔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無知)한 범죄의 십자가까지도 그 형제들을 대신해 짊어지고자 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도사목회

*** 전국 교도사목 담당자 주소록**

담당소	성명	영세명	구분	주소	전화번호
영동포 교도소	김종국 정일기 심홍보 양 박용수 최광규 최영순	토마스아퀴나스 마리비안네 바 오 로 유스티노 요 안 나	신부 신부 신부 수녀	구로구 개봉2동 259-3 개봉동성당	02-615-8815
				구로구 구로1동 496-16 구로1동성당	02-857-2754
				구로구 고척2동 241-180 만남의 집	02-689-9715
				서대문구 창천동 4-67	02-312-8989
				영동포구 영동포동 5가 29번지 삼성당	02-675-5870
구로구 구로1동 구로주공A/T 107-308	02-876-8829				
영동포 구치소	김정수 박건호 김명희 황신자 김용자	베 드 로 베 토 니 카 울 리 안 나 데 레 사	신부	양천구 신월3동 195-1 살레시오회	02-691-6543~5
				마포구 연남동 487-122호	02-333-0218
				양천구 신월2동 458-8 대경연립 가-202	02-696-7037
				동작구 흑석1동 239-84 23/4	02-812-0303
				구로구 개봉1동 106-3 동백빌라 B동 202	02-687-4081
서울 구치소	최 조 김자선 김셋별	크리스티나 잔 말 구 다 니 엘 엘 리 사 뱃 안 젤 라	수녀 수녀 수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8 과천성당	02-502-8592
				용산구 산천동 10-1 계성 유치원	02-704-4270
				강서구 화곡동 105-51 때제공동체	02-602-2439
				영동포구 여의도동 시범A/T 12-905	02-783-3644
				송파구 방이동 대림A/T 1-905	02-422-7882
의정부 교도소	주경수 이지혜 강준건 이영재 서화자	새 실 리 아 루 도 비 꼬 베 드 로 로 사 리 나	신부 수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2-16	0351-872-0301~7
				동작구 상도2동 24-83	02-816-2317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02-992-2350
				도봉구 수유2동 254-27	0346-63-2663
				구리시 수택동 493-9	02-912-2780
성북구 장위동 231-249					
성동 구치소	오 윤옥녀	베 토 니 카 막 달 레 나	수녀	구로구 가리봉1동 131-1	02-865-8174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02-400-9734
송파구 마천2동 347-10					
서울 소년원	이기철 최 민성동	마 리 아 모 니 카	신부 수녀	영동포구 대림1동 929-1	02-832-5026
				근로청소년회관	02-719-4611
				용산구 청파동 2가 38-1	02-359-6540
은평구 역촌동 9-50					
소년 감별소	김은자 손종수 김경희	마 리 아 바 오 로 다 리 아	수녀 수사	양천구 신월3동 174-11 나자렛의 집	02-691-5960
				영동포구 대림1동 929-1 살레시오회	02-832-5026
				강남구 청담동 117-3	02-549-1164
광주 교도소	임병태 심 김	시 몬 데 레 사 크리스티나	신부 수녀 총무	광주시 북구 문흥동 274-1	062-263-3004
				광주시 광산구 금호동 산111	062-371-0172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	
일로 교도소	임영배	타 태 오	신부		
청주 교도소	박정학 이열우 고경호 김수욱 김	세 라 피 아 벨 베드로프리에 엘 리 사 뱃 몬 다 라	수녀 회장	충북 청주시 사천동 29-10	0431-55-5923

대전 교도소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	042	822-9314-6
대전 지방교정청	306-050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410-2 삼일빌딩	042	632-7101-3
마산 교도소	630-020	경남 마산시 회성동	0551	98-9001-3
목포 교도소	534-9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0631	79-4161-3
부산 구치소	616-011	부산시 북구 주례동	051	324-5501-2
서울 구치소	433-8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	0343	23-6100-7
서울 지방 교정청	152-019	서울 구로구 독산 본동 954-4 헤런 빌딩	02	861-2252-3
성동 구치소	134-160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02	402-9131-4
수원 교도소	440-1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63	0331	211-1285-7
순천 교도소	546-810	전남 송주군 서면 선평리	0661	52-2036-7
순천 교도소 (소록도 지소)	548-905	전남 고흥군 도항읍 소록리	0666	844-0357
안동 교도소	762-800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 3동 121	0571	858-7191-4
안양 교도소	430-083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0343	52-2181-3
영등포 교도소	152-081	서울시 구로구 고척 1동	02	681-2661-5
원주 교도소	220-15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0371	42-9581-4
의정부 교도소	480-06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0351	42-7601-2
인천 구치소	402-042	인천시 남구 학익동	032	863-4086-8
장흥 교도소	529-800	전남 장흥군 장흥읍 윈도리	0665	2-2171-3
전주 교도소	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0652	223-3262-4
제주 교도소	690-162	제주도 제주시 오라 2동	0641	42-1062-4
진주 교도소	663-910	경남 진양군 대곡면 광덕리 700	0591	41-2181-2
천안 개방교도소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0417	61-4301-2
천안 소년교도소	333-830	충남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산 27	0417	567-3461-3
천안 구치지소	333-830	충남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산 27	0417	567-4538-9
청송 교도소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0575	72-9500-2
청송 제1 감호소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0575	72-9508-9
청동 제2 감호소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0575	72-9512-3
청주 교도소	360-202	충주시 미평동 148	0431	68-8171-4
청주 여자 교도소	360-202	충주시 미평동 148	0431	68-8177-8
춘천 교도소	206-810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거두리	0361	3-7041-3
홍성 교도소	350-8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0451	32-2194-5

취지의 글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도사목회
전담신부 김 우성(비오)

이번에 전국교도사목 실무자분들, 각 지방의 36개의 교도소를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각 소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교도사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굉장히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 복음 1서 2장 9절에서 10절 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는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에 의해 소명을 간직한 채 이 세상에 난다고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순한 말 한 마디는 험란한 인간사 안에서 부딪히는 고통의 의미와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쪼개어 베푸는 나눔의 의미를 힘없이 깨닫게 해 주는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우리들로서는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적 사랑을 우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출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이 출소자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온지 오래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문제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왔는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교회의 현실 토대 위에서 2000년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교도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도사목이 무엇인가?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도사목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현실과 아픔 등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만이 아닌 마음과 사랑이 깃든 행실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교도사목의 진실된 복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그리스도의 말씀 실천을 재고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화방법을 개발하고 보다 폭넓은 사랑나눔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어느 한 죄인의 무서운 죄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그들의 무지한 범죄의 십자가까지도 그 형제들을 대신해 짊어지고자 했는가? 를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특별히 전국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보다 나은 교정에 뜻을 두시고 법무부에 계시는 교정국장이신 유순석 검사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특별히 교도사목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강우일 주교님께서 격려 말씀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격려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장우일(바오로)주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정 국장님 또 여러 교형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최근에 여러 대륙을 방문하시면서 그 기회마다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화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전교'라는 '전교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예비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밖에 여러성사를 베푸는 것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정한 복음화는 결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화는 거기에서 시작되고,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 '자신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안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가', 그것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것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전교하고 있다는 말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화하고 있다는 말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가 복음화의 현장이요, 복음화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본당이라는 교회의 최소 단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목활동의 주종을 이뤄왔으며 그외의 분야는 모두 특수사목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다 정상적인 사목의 장이 되어야지 결코 특수적이거나 예외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하신 활동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중점을 주셨던 것이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치시고 악령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일은 그 사람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지성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도사목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죄인이라고 못박아 버린 사람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으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교도사목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이어받은 가장 정통적이면서 중요한 사목활동이라고 우리는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이 한국에 전국 36개 교도소와 16개의 소년원, 감별소가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가 거기에 투입하는 관심과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은 사실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교회 장상의 한 사람으로서 인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교회 전체 주교님들, 신부님들, 또 우리 교우분들, 모든 우리 교회 전체 의식이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발이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계발시키고 교회 밖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좀더 깊이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에 교도사목을 하는 실무자분들이 먼저 좀더 교도사목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 축적된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자주 서로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교회 전체의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본당에서 일반 사목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에게 교도사목의 중요성을 좀더 다시 일깨워 드리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좀더 뚜렷한 목표 의식과 또 현실감각과 방향을 설정, 올바르게 또 굳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처음 개최된 것이 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교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橋正의 現況과 實狀 그리고 참뜻

유순석(法務部 橋政局長)

법무부 교정국장 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천주교 교도사목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소자들의 심성순화와 그들을 신앙의 길로 참다운 재생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 큰 기적을 이루는 계기가 될 교도사목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의 현황과 여러가지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교정의 현황과 실상 그리고 참뜻

법무부 교정국 현황

* 본 부

- . 1심의원, 6개과가 있음
- . 주로 제도개선, 정책입안, 인사, 예산 등 업무를 함

* 지방교정청

- . 전국에 4개 지방교정청을 둠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 . 관리국과 교화국을 둠
- . 산하기관의 현장지도와 감독을 함

* 38개 교정기관

(29개 교도소, 5개 구치소, 2개 보호감호소, 2개 지소)

- . 여자교도소 1개, 개방교도소 1개, 소년교도소 2개, 치료전담교도소 1개가 있음
- . 청송초중구금교도소 신축증 10월 준공예정
- . 울산, 논산, 인천, 북구구치소 신축예정

직 원

- * 총 15,801명 중 여자직원은 742명, 경비교도대 4,155명
- * 재소자 수와 대비하면 1:4.6명

일본 1:3.6명, 미국 1:3.2명에 비해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증원이 요망됨.

몇년 전부터 3부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상 근무 환경이 열악함.

- . 이들은 임명장 수령과 동시 "무기징역"에 처해 졌다고 함
- . 4주 교육 후 즉시 사방근무에 들어감
- . 91년 이직률 10.4% → 일반공무원 5% 보다 많이 높음
- . 91년에만 주로 압으로 사망한 직원이 10명이며
- . 92년 현재까지 사망 10명임

그래서 여러가지 사기진작을 겸한 조직의 활성화와 선진교정체제구축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처우적 개선을 부단하게 시행하여 오고 있음.

- * 그 첫째가 지방 교정청 신설 : '91. 11. 1
전국에 산재한 일선 교도소 등에 대한 현장감 있고 신속한 지도, 감독, 대처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정착 되면서 다대한 효과를 거양.

- . 직급향상
교정부이사관 3명, 교정감 7명, 교정관 14명, 6급 이하 101명

- * 교사 990명 승진 — 심사승진 제도 확립 — 장기근속자

- * 특진제도 신설 — 1992. 5. 1 자 — 경찰, 군, 소방 공무원
등에만 있던 제도

- * 각종 수당
 - . 야간근무수당 신설 월평균 5만원
 - . 감호수당 증액 3만원 → 6만원
 - . 계호수당 증액 2만원 → 4만원

- * 민원담당 직원 수당 대상자 확대
 - . 68명 → 176명
 - . 경찰관들과 월 7만원의 차이가 있음.

재 소 자

- * 55,743명 (92. 10. 31 현재)
 - . 기결 31,020명, 미결 24,723명 (여자가 2,440)
- * 91년도 입소, 출소, 연인원
 - . 입소 120,547명, 출소 122,067명
- * 기결수중 흉악범
 - . 강도 70,066명
 - . 살인 2,321명
 - . 마약 508명
 - . 강간 2,112명
 - . 사형수 수십명
 - . 무기수 1,000여명
- * 초범자와 재범자의 비율
 - . 36% : 64% (일본은 64.7%가 재범 이상임)
- * 최근 5년간 출소자 재범율
 - . 전체 출소자의 재입소율은 25.3%
 - . 기능자격 취득후 출소자의 재범률은 9.1%

교육, 훈련 실적

- * 기능자격 보유 재소중인 자 5,341명
- * 91년도에도 55개 직종에 5,352명 기능훈련 시킴
 - . 기능검정 합격률 높임 (일반인 22%, 재소자 90.7%)
 - . 각종 기능경기대회 다수 입상함
 - 91년도 84명 (전국대회 금4, 은1, 동3, 장려3)
 - 92년도 131명 (전국대회 금3, 은4, 동4, 장려6)
- * 1급 기능자격 취득후 출소자 150명은 전혀 재범없고 기능자격 취득 출소자 재범률은 9.1%로 낮음
 - . 고급 기능자격 취득이 재범방지에 유효
 - . 전국 19개 기관에 1급 기능사 훈련반 편성 195명 집중 훈련 실시중
- * 학업 중단사해 방지 위해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시킴
 - . 91년 검정고시 합격 606명 - 수석 11명

- . 92년 대학합격 11명 - 과수석 1명
- . 92년 검정고시 합격 734명 - 수석 10명 (만점 1명)

- * 특정강력법 특별정신교육
 - . 91년 15,363명
 - . 92년 13,638명

교도작업 실태

- * 교도작업
 - . 60개 기업 위탁계약 41개 품목 생산함
 - . 일일평균 18개 직종 19,600여명 출역
 - . 연간 세입 139억원
- * 외부통근작업
 - . '91. 6. 8. 대통령계 업무보고시
 - 교도소내에 기능자격 취득자 6,000여명이 있는데 외부통근작업으로 산업 현장감각 익히고 기술수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시
 - 작년 10월부터 1일 400명 출역, 현재 1,060명 출역중
 - . 산업체에서 근면성 높이 평가, 인근주민도 호평
 - . 5월말 안양 건설현장에서 도주 사고 1명 있었으나 외부통근 작업은 개방처우의 한 형식이므로 예상되는 일이며 연인원 245,022명 출역중 1건 발생한 사고임으로 위축되지 않을 것임
 - . 美國 : 자기들끼리 출퇴근, 화, 목 - 12시까지 外出 - 연구발전계획
 - . 私設橋導所 운영 - 기독교 연합회 희망 - 연구중
- * 작업상여금 현실화 추진
 - . 외부통근자는 70% 본인에게 지급
 - 건설업체 출역시 1일 기술자 3만원, 일반 1만5천원
 - 최고액 - 7백7만8천원, 최고액 출소자 - 652만원
 - . 청송보호감호소
 - 재소자가 가족에게 송금하는 액수 월 700만원 - 1,400만원
 - 명절 1,500만원 정도

접견 . 기타

- * 91년도 접견 265만 4천 6백 88회 실시함
 - . 1일 최고는 서울구치소 1,825건

. 일정시간대에 집중되고 시설 노후하여 지난 7월부터 전면개수 정부
기관중 모범

- * 출정은 39만 8천 2백 59명 나갔음
- * 귀휴 456명
- * 사회견학 2,835명
- * 가석방 6,500여명 실시함
- * 환자치료 2백 72만 9천 119명
 - . 의사 55명, 공중보건의 31명
 - . 가족의 날 - 연구검토
 - . 부부면회제도
 - . 담배 허용문제 - 일본, 다다미, 공청회, 건강

교 정 사 고

- * 자살사고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 선고형량에 대한 불만, 예상외의 가족
동향 등이 심적 충격 일으킴
 - . 나무젓가락, 못, 철사 먹는 것
- * 변사사고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으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평소 지병이 악
화되어 가끔 이어나남
- * 그외에 상호폭행, 폭행치사는 문제있는 사람을 다수 수용하는 까닭에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 소내 생활에 불만, 자기 과시를 위한 소요, 난동도 항상 위험성 있으며
- * 91년 도주사고는 3건 있었고,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인질 난동이 185건
- * 기타 많은 물건손괴, 직원협박 등이 있어 엄중처벌함
 밥 → 서울구치소 — 쥐

다음은 교정에 대한 비난입니다.

- . 교도소는 범죄학교냐, 돈 있는자에게는 호텔이고 없는자에게는
지옥이다
- . 직원이 모두 담배장사로 돈 번다.
- . 포커 등 도박이 가능하고 조직폭력배가 돈벌어 나온다.
- . 히로뽕, 양주, 생선회에 초밥까지 먹을 수 있다.
- . 서신연락, 현찰전달, 음란 비디오, 외박까지 하고 들어온다.

- . 어불성설이며 성실한 직원에게 모욕적 표현이 아닐수 없다.
물론 직원이 15,000여명 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정에 끌려서 등의 이유로 일부 실수하는 직원도 있었음.
- 반복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대방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 협박과 유혹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으나 앞에 적시한 내용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내용임
- .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유언비어나, 영웅담이나, 감정가진 출소자의 모략이나 지금은 정신교육 충분, 지방교정청활동 향상됨.

한편 저희 교정은

- * 충격적인 범죄 발생하면 항시 비난을 받고 있음.

- . 전과 몇범
- . 교도소는 범죄학교냐 ?
- . 더 오염 시켜서 출소 시킨다

- * 지하철 제기역의 박동수 (33세) 살인사건

- . 92년 3월 17일 밤 9시 50분 사고임
- . 91년 12월 19일 공주교도소에서 (강도강간, 징역10년)출소한자임
- . 교도소에서 사형당하고 싶어서 사람을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

- * 충격적 발언

- * 일차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

- * 교도소 출소자

- . 나갈 때는 모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하고 굳은 결의로 나갈 수가 다시 들어 오고 싶겠는가
그러나 그 결심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결국 재범

- * 그래서 강력범죄로 3년내 재범한 사람 25명을 표본조사하여 범죄원인, 사회부적응 이유, 재범원인 등 정밀분석 중임.

- . 대충 나온 자료만 보아도 22명이 부모사망, 이혼, 부모학대 등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여 범죄에 몰들고
- .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못한 이유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하기 싫어서 취업을 포기하였고
- . 부모 형제 등이 도와주기를 거부하였으며, 사회는 냉대했고, 출소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항시 불안, 한탕해서 밑천을 장만하겠다는 생

각이었음

- 개증에는 몸의 문신 때문에 자리잡지 못한 경우 있음.
- 그래서 조사해 본바 12,000여명 문신 → 동화안됨 → 문신제거 방법 연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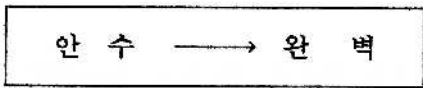
- * 교정직원들은 1차적 책임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 경주토록 교육
 - 교정공무원 자존심 상하는 일로 알자 -
 - “적어도 우리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자인데, 우리가 관리하던 자인데”
 - 무슨 얘기라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 친구가 되어주고
 - 가족이 되어주고
 - 스승이 되어주라
 - 문제 재소자가 “내가 왜 가족 친지를 떠나서 여기에 홀로 와 있는가?” 하는 반성의 마음이 바탕되어 수형생활 하도록 직원이 성실성에서 모범 보이라
 - 조석으로 하는 방송내용을 양심에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하라 지시하고 시행되고 있음

* 사 실

현실은, 모든 언론은, 국민 여론은, 정치권, 관가 등 어디에서나 교정에 대한 요구는

- 한번 입소했다가 출소한 자는
 -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내보내라는 것.
 - 어떤자극, 어떤장소, 시간, 유혹, 어려움, 충격에도 욱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완벽한 인간
 - 바늘로 찢려도, 발로 차도, 배가 고프고, 추워도, 병들어도 인내하는 완벽한 인간

- * 만일 우리의 교정직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수사명을 부여받아 신통력이나 어떤 특수 임무 수행의 초능력을 허락받는다면



사실상 불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

- *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교화위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작용되어 대단한 기적같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어 오늘 같은 교정의 효과가 거양되고 있음
- * 문제 재소자는 출생, 성장과정부터 문제 있음
 - 심성은 고갈되고, 고립되어 닫혀 있음
 - 인내심 부족하고 “욱”하는 충격적 행동하며, 피해의식 적대감으로 차 있음
 - 입소시 그들의 눈동자 → 저주와 살기, 자포자기와 냉소, 적대감으로 충만.
 - 마주 쳐다보기만 해도 전율을 느끼는 경우 허다.

* 이들을 사랑과 정으로 감싸주고 격려 해주어 새로운 삶의 용기를 심어 주는 것이 종교. 교화위원들이 해주시는 일임

* 종교. 교화위원 현황 ('92. 11. 11 현재)

총 3,173명

- . 종교위원 1,422명
 - 천주교 255명 (신부 63, 수녀 32, 신도 160)
 - 기독교 697명
 - 불 교 470명
- . 교화위원 1,751명

* 종교. 교화위원 주요활동 ('92. 9. 30 현재)

- . 교화 기탁금 등 기증 : 353,160,000원 상당
('91년도 539,903,000원)
- . 자 매 결 연 : 5,451명 ('91년도 7,664명)
- . 신 앙 지 도 : 24,948명 ('91년도 42,688명)
- . 교 리 지 도 : 38,345명 ('91년도 64,444명)
- . 취 업 알 선 : 246명 ('91년도 518명)
- . 출소자 수용보호 : 47개 시설 265명 보호
 - 천주교 "평화의 집" 등 5개소 (김우성 신부 : 명동성당)

* 기결 수형자중 천주교 신자 5,227명 (16.6%)

여기에서 잠깐 저희 교정에서 "재소자들의 어머니"로 불리워지고 존경 받고 계시는 "정팔기" 할머니를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감히 제가 그 어른의 행하심을 입에 올린다는 것 조차 죄송, 송구스럽 습니다만 모든 교정직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반드시 배우고 본 받아야 할 어 른이시기에 용서하실 줄 믿고 소개 올리는 것입니다.

76세의 고령이심에도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재소자들의 일로만 동 분서주하고 계십니다.

19세에 결혼하시어 21세 때 부군과 사별하셨지만 유복자이신 아드님 을 지금 모대학 원로교수로 재직하실 정도로 훌륭히 키우시고 몇십년을 사시든 집을 팔아 전세방으로 옮기시고 참기름 장사를 몸소하시면서 문 제 재소자 80여명을 돌보고 계시며 항상 3-4명의 출소자를 집에 데리고 계시면서 그들의 취업알선, 결혼주선 등 어려운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엄하실 때는 친부모보다 더 엄하게 다루시며 자애로울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천사의 사랑으로 그들을 쓰다듬어 차갑게 얼었던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결코 출소후에도 배신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지금은 할머니의 지도와 기도로 정착된 출소자들이 할머니의 정성을 받들어 새로 출소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 받아야 실천 해야 할 실로 살아계신 천사님이라 해야 할 것 입니다.

작년 12월 18일 광주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당한 전모씨의 경우는 더욱 우리 천주교 교화위원님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드리는 더욱 애뜻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89년도에 친구의 부인을 강간, 살해하고 2살짜리 딸까지 살해한 악의 극에 달했던 사형수였습니다만 범행 직후부터 종교위원이신 신부님의 지도와 기도로 천주교에 귀의하여 24시간 기도하는 신앙생활 끝에 사형당하면서도 극히 평온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소리높여 찾으면서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여 입회했던 저희직원이 "이 사람은 완전히 교화되었으며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를 써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문제 재소자들 그들의 상황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상할대로 상한 그들의 마음, 지칠대로 지친 육신, 굳게 닫힌 마음, 뚫고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 않던 그 단단한 마음의 문을 우리의 종교위원님들은 정성을 다하는 기도와 기구, 설득으로 뚫고 들어가 드디어 빛을 비춰주고 바위덩이 같던 그들의 마음을 마침내 녹여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역사를 이룩해 내시는 피나는 노력을 해오신 결과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이야말로 애국과 사랑의 실천이요, 전국민의 큰 인사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국가가 건강하게 존립, 발전 →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함.
- . 법과 질서가 지켜지게 하는 역할을 평면에 놓고 볼 때
경찰, 검찰 - 위반자 체포 수사, 기소
법원 - 재판, 형선고 → 끝입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교정과 종교위원님 여러분이 이들을 맡아서 사회로부터 격리 → 사회안전

심성순화,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으로 - 재생

이렇게 볼 때 교정의 역할은 그 어느기관 보다 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의 교정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 국민학교나 유치원 학생들 → 커선 뭐 될래? -

판사, 검사, 장군, 경찰서장

교도소장 되겠다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교도소장 되겠다고 손드는 어린이가 많을 때 즉 국민 모두가 교정과 여러 위원님들의 봉사하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 하실 때, 교정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때 우리는 비로서 범죄와의 전쟁을 완승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따라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도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우린 천주교 교도사목회가 더욱 발전되어 큰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사형과 생명존중

이 상혁 변호사

이 상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연설을 하는 것은 좀 서툰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책을 보고 느끼는 바를 글로 써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폐지운동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번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형폐지운동을 꼭 해야 되는가?, 또 사형이 꼭 있어야 하는 제도인가?에 대하여 따져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일에 나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법과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입문 시간과 법철학 시간에 들은 얘기를 곰곰히 되짚어 보면, 『규범』이라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 규범과 사실의 문제,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문제, 그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 하면,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이런 제도를 있게 하는 동기 또는 폐지하여야 하는 동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라는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고 이런 제도를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뛰어드는 문제는 동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졸업반에서 법철학 공부를 할 때 단편적으로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법과 대학을 다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58년도에 서울 법대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의 한국 형법 교과서는 일본인 『오노세 이쥬로』 나 또는 『마키노』 같은 분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에는 『마사끼 아끼』라는 분의 번역본 책이 그 당시 우리 형사법학책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본에서 사형제도폐지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마사끼 아끼』 형사정책학자의 책을 갖고 공부하면서 단편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후에 판사 생활을 한 5년하고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법조 생활을 한지 꼭 30년 되는 해입니다. 62년 판사 임관을 하고 67년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렇게 개업을 하고서 제가 법조생활 전반 15년은 법조 실무가로서 민사 사건도 하고 형사 사건도 하면서 구치소를 드나들게 되었고, 사형수를 접할 기회가 실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때 사형수를 접한 것은 재야 법조인으로서 변론을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때 만난 사람이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김대두라는 사람을 1심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으로서 자원봉사로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심성교화도 하고 해서 말문을 띄게 했고, 또 교화해서 산자를 만든 그런 사연

도 있습니다. 여하튼 법률적 측면에서 김대두의 1, 2, 3심을 무료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무렵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특히 제가 집안 일로인해 교도소의 교화 활동이야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값있는 일 중 하나다 싶어서, 1977년부터 서울 구치소 독지 방문 위원으로 재소자 교화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교화활동에 선배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구치소의 일반재소자들은 사형수나 장기수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듣는 것은 종교위원과 교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정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교도소 직원들 보다도 그 재소자들과 대화를 하고 심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다시말해서 재소자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종교위원들과 교화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교화 대상으로 사형수나 장기수를 교화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재소자들을 교화시키는 좀더 능률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는 사형수에 대한 문제, 사형 제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1980년 전반, 소위 5공시절에는 사형수를 교화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공개하여 내놓고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29선언이 있던 1987년 무렵에 저는 10여년 동안의 구치소 교화사업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은, 일본의 유명한 유학자인 『사포 잇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행은 옆사람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좋은 선행은 옆사람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그 모르게 하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알려 졌을 때 그 고품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고품을 해라” 하는 말씀이 더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87년 이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장기수와 사형수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5월 30일에 사회적 운동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사형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을 앞당기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저희는 89년 5월30일에 『한국 사형 폐지 협의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구구하게 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하는 이유 논거, 그것은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즉 이러한 것을 실제 사회에서 TAKE UP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 클린턴(법과 출신)이 열렬한 사형폐지론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몇일 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요미우리 신문의 11월 5일자 조간을 보면 클린턴 사상에 관한 기사가 반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클린턴의 자세와 그의 여러 정치철학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클린턴은 많은 구원 탄원이 나온 사형집행 명령에 지사의 입장에서 서면하였습니다. 그 자신은 사형폐지론자이지만 88년 DUKAKIS 민주당 후보가 범죄자에게 너무 온정주의자라고 공화당에 공격당한 커다란 실증을 놓고 앞으로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실점이 될 것이 두려워서, 주변에서 강권을 행사해서 사형집행명령서에 한 번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이 이 사람이 열렬한 사형폐지론자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사세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사형폐지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간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유와 동기에 있어서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형이 폐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 논거는 어떤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희 사형폐지 협의회가 여러 사람들과 논의한 결과로 얻은 집약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인물로서 나누어 드린 것 가운데 '한국의 사형 폐지 현황과 전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하나는 1993년 7월에 동경에서 아시아에서의 『사형폐지 FORUM』이 개최됩니다. 작년 동경 히비야 공회당에서 『일본 사형폐지 FORUM』에 참가했을 때 그 사형폐지에 대한 열기는 2000여명이 모인 히비야 공회당에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는 종교인들도 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히 제게 감명을 준 것은 연예인들이 지루한 막간을 매워주면서 사형폐지의 열기를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모여 폐지에 대한 FORUM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제가 일본에서의 FORUM을 준비하느라 만든 책자입니다. 여기에 좀 더 보충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들어 간 책자를 부랴부랴 만든 이유는 이 모임의 주최자로부터 사형폐지의 논거를 부탁받았기에 간략하게 두 가지 목적으로 부록에 '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아시아 FORUM에서 논의한 내용이고 이후부터는 왜 사형이 폐지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잡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옛부터 「8조법금」이라는 여러가지 사형(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남의 처자를 간음하면 사형에 처한다 등)제도가 있었습시다만, 여하튼 '이런 사형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한번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형을 폐지하자는 의견 이전에 사형이 과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사형이 있어서 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지말라”는 것은 절대적 명제입니다. 또한 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범죄 때문에 사람을 꼭 죽여야 하는가? 라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기의 문제가 아닌 합리적 규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대화에서 독특하게 설명한 일본의 형법학자 '쾨바르트'라는 스페인 학자가 논거한 「인간존엄과 사형」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사형폐지 논고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27쪽을 보면 「사형은 존치론자가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과연 위화력(겁주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쉐링」이라는 교수는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나 평균 살인률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5년간에 걸친 범죄발생을 특히 살인범죄 발생률과 대비하여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쉐링의 연구에

의하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연구는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흉폭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사회통계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이 운동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했기에 웨링의 사회통계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여하튼 결론부에서는, 미국에서 5년간 살인사건과 사형집행과는 서로 함수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히』도 살인들과 처형들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과학적으로 그의 논문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전미 아카데미 조사단에서 그 과학적 관계를 정책에 쓰자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데 사회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억제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전미 아카데미 과학 조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여러 학자가 참여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단에서 결론으로 얻은 것은 살인률을 결정하는 이유는 사형보다 사회 인구적인 통계 그리고 구금 길이와 권계가 있지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과는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살인범 중에는 정신병자나 결격자가 많습니다. 또한 교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생명을 부정하는 자, 자신을 죽이기 위해 죽였다는 이에게는 사형이라는 것은 겁을 주지 못합니다. 또 살인범 중에는 걱정범이 많습니다. 완전 범죄자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잡히지 않아야겠다 라는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형제도는 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죄를 짓고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처벌 받으며, 아무리 도망쳐도 금방 붙잡힌다는 처벌의 신속성, 공정성이 죄값을 치루게 된다는 것과 범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떠난 의미로 정의와도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사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터입니다.

두번째로 27쪽 하단에서 「사형은 인도적 측면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설명을 붙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부연한 판결문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단 긍정한다 하지만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부터 이유와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불가양도의 것' 이란 목숨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필요성이고 공공질서를 위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형은 인도적인 이유에서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형제도가 발 붙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폭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가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악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 절대적인 것을 앗아가는 것은 절대악이다』 라는 학설의 예는 생명의 존귀함을 절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 소를 잡는 것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일본의 쯔바르트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과 가치를 지닌 인간생명 말살 제도는 인간존엄사상에 위배된다, 인도적 차원에 반한다』 라는 두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형제도가 인도적 의미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임에

는 다름이 없습니다.

세째로 28쪽에는 「사형은 오판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형을 연도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오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6.25당시 한강 폭파 사건으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사형집행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63년 육군 법무관으로 서 육본에 근무할 때 전임 판사에게서 판결이 나지 않아 제가 재심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 부인이신 옥정혜 여사가 방문해 왔기에 그 당시 상황과 당시의 보좌관들에게 수소문하여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무죄 판결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다해 전역한 후 후임자에게 무죄 판결문을 맡겼습니다. 사실 오판 문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사형되고 나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오판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위험 예측성이라는 문제입니다만 오판은 사형에 있어서 특히 회복불가능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네번째로 28쪽 6행에 제시한대로 「사형은 악용될 수 있고,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으로 남미를 보면, 군사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형제도가 부활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폐지되는 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당시 수백명이 암매장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전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에 악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령 조봉암씨 경우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논고에는 「형벌은 응보가 아니고 교육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일보복의 원리, 응보의 원리, 이것이 형벌의 목적이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형법이론과 형벌은 교육적 측면으로 사회복귀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주관주의 이론의 형법대립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형벌은 교육적 이론,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이 다라는 사실에 거의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처형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2차대전 이후에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일반 유기 징역도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철저히 인성 교육과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5년동안 국가가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하고 사회복귀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사회에 일단 석방하면서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감호인을 붙여 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망정 그러한 교육적 기능 없이 사형수를 처형한다는 것은 역시 이런 형법이론에 있어서 교육 이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17쪽을 보면 72년과 74년, 76년, 77년, 82년, 정치적인 격동기에 집행이 많았습니다. 이 사형 집행의 연도별 추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다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까 사형제도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통계표에서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형편은 다르지만 지난 8월 5일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딱 1000일이 지났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0일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어, 형이 확정되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엔 대단히 드라마틱한 문제로 일본의 사또오라는 법무장관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사형집행 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양심선언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법무대신과 사법대신에게 집행명령을 날인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사형폐지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형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줌바르트 교수의 이론을 여러분과 잠시 논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제도의 첫째가 사형제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엄성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인간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는 가치와 인격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말살한다는 것은 반(反)윤리적이고도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선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처럼 망나니를 시켜서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또 그 제도가 그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처럼 오늘날 우리 현실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가? 와 우리 현시점에서 하나의 범죄로 인해 목숨을 빼앗는 제도 즉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완전히 입증되어야만 폐지고 존립하고 하는 문제가 논의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 사회에서 사람의 목숨을 국가권력으로서 앗아가도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이냐부터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제가 이유와 동기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명제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면 그 예외가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논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응보사상과 속죄사상을 논의해 봅시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지 않느냐, 그럼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명제로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라는 것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목숨을 빼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합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이다, 또 속죄와 관련지워 사형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은 범죄를 반성하는 경우와 반성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형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교육하지 않고 사형시킨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런 의미로 줌바르트 교수는 응보나 속죄사상 측면에서도 사형이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가족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피해자의 기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수인이 죽기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 경우 그 사형수의 심정과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을 대비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부하 직원의 보고서에 ‘그 사람은 깨끗한 상태로 돌

아 와서 안 죽어도 되었는데 죽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점이 피해자의 가족과도 연결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가능성이 없는자, 스스로 사회에 돌아갈 것을 포기한 자라 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사형보다는 무기 징역으로도 사회를 충분히 방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평생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 더 가혹한 것이 아니냐, 더 나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 좀바르트 교수는 감화시설 내에 복지 시설로 내면 생활과 직업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악을 단절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서두에 사형의 위화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 좀바르트 교수는 ‘사형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해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없으면 살인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 이는 쉐링 교수의 연구에서도 사회과학적 통계방법으로도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이분의 경우는 서독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살인범은 대부분 변질자이고 격정범이고 그도 범죄의 순간에는 이성의 제어력을 상실된 경우가 많고 냉정한 범죄자도 자신이 잡히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형규정이 범죄 억제력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경우 이런 점에 대한 논증을 밝혔고 미국의 델라웨어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뒤 4년간 잔혹한 범죄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사형을 다시 부활 했는데 폐지한 후보다 살인이 더 늘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점으로 볼 때 이분은 사형 폐지의 다른 측면의 이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폐지 논고에서도 몇가지 헛점이 있습니다. 좀바르트 교수의 재판 문제라든지 정치적 남용, 인간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신만이 할 수 있다 라는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이유와 동기의 구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재판, 사형의 남용 문제나 사형을 선고하는 판단, 그것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동기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형제도가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존치론자들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증책임론이라는 주장책임 이론이 있습니다. 주장책임 이론은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이가 그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명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라는 절대명제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그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이유를 사형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법칙의 절대원리입니다. 거기에선 증거입증 책임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 소위 거증책임이론에서 그 책임부담의 원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절대적인 일반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예외로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존치론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폐지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출할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두고 논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폐지에 대해 논의할 때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명권적 기본권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폐지의 당위성을 도출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를 논거하는데, 사형되는 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반성하는 자와 반성을 하지 않는 자로 나타내는데, 반성하는 자도 그 죄값만큼 처벌해야 하지만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새사람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성하지 않는 자도 인간인 이상에 마음을 고칠, 개심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사람을 죽인다면 그 가능성마저도 빼앗는다는 자기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람이 설명한 바를,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죄인은 하느님에 의해 용서받는다든 신앙에 비추어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를 반성하지 않은 채로 죽이는 것은 그를 영구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명백하고 명료한 이유없이 교수대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살인 행위입니다. 저는 법률가이기에 저희 사법계에서는 이미 집행되었지만, 손오순이라는 가톨릭 신자하고 서채택이라는 불교신자를 모델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이에 대한 변론 공판을 갖고 대학교수 네분이 나오셨는데 두분은 사형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분은 존치론자 입장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도 폐지론자인데 이르지 않느냐 하는 시기상조론 입장에 입각해서 의견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설명드릴으로써 오늘 대화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대 법대의 헌법학 교수인 김철수 교수나 권영성 교수나 고려대학의 구병석 교수는 일관되게 사형제도가 수용자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에 본질적인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헌법 10조, 소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두 규정에 의거하여 사형수나 사형과 관련이 있는 판사나 검사, 사형집행 명령권자, 검사자나 사면권자 등 관련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에 교화관계로 드나드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 교도관이 거기에 기꺼이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형집행이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얼마나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기에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침해이고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이고 그것은 헌법 10조와 3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9쪽에 제가 몇가지 사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사형폐지를 일거에 완

전히 폐지하는 방법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 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완전 폐지론』과 『단계적 폐지론』이라 칭하는데 사실 『단계적 폐지론』이라 하는 것은 사형 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완전폐지론』이야말로 목표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사형폐지에 장애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거론되었다가 부결될 경우 반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저희가 3당 대표한테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논거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입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공안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폐지에 관한 것이 국민 감정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정치가들은 자기표를 의식해서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세번 정도 촉구 서한을 보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고 묵살일 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소위 사형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인지 법무부에서 형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10개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 되도록이면 선고하지 않는 기준을 형법에 명시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집행한 판사와 검사를 사형집행에 입회시키는 제도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합의제 전원의 찬성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법원의 관례는 다수결이기에 사형과 같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절대형에 있어서는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지어 재미있는 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형법 학자인 단도시게미스는 동기부여이론 같은 자유의사 결정이론을 갖고 있는 형법 학자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비었을 땐 77세 이셨는데, 그분이 최고 재판소의 판사로 계실 때의 일입니다. 최고 재판소에서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는 즉 상고심에선 법률 문제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실인정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에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심리를 해본 결과 사실인정이 조금 잘못된 듯한 흔적이 있어서 판결을 변경하고 싶었는데 상고심에선 사실인정문제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 한 시골 촌락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범행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중에는 사형수로 지목되었는데, 일본말로 무리하찌부라는 동네에서 머저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는 입장이었지요. 따라서 증거 사실 인정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은 일종의 여론 재판 비슷한 사실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도 시원찮은 짓을 여러번 해서 싫어한 일도 있으니까 이 사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사실인정되어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가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도판사가 최고 재판소의 판사로서 그 사건을 다루면서 법률심이지만 사실인정을 다시 하면 극형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

까? 그렇지만 2심의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되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상소를 기각해서 사형판결을 확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사형선고를 하고 돌아 오는데 방청석에서 '사람백정'이라고 몇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하는 소리가 당신의 등줄기에 메아리 칠 때 "아! 이것은 서법살인이라고 얘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바로 이 문제를 내가 상고심인 최고 재판소의 판사로 서 고쳐야 될텐데 법의 장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관을 하고 내 이론을 사형폐지로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형법교과서를 보면 동경대학 교수시절에는 사형 존치론자였습니다. 사형 찬성자란 얘깁니다. 그분이 최고 재판을 를 퇴관하고 현재 78세이신데 사형폐지 운동의 기수로서 남은 생애를 모두 사형폐지에 바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사형폐지' 라는 책을 내시고 당신의 형법 교과서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구형과 선고라는 문제, 단도 시계마스 교수의 체험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기회를 폭넓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형사소송제도 개선 심의 위원회에다가 의견서를 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회복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재심제도의 문호를 좀 열어주자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재심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 결정을 받고 개시가 되면은 사실심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이 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시결정을 위해 하는 노력이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이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뚫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사형수가 되살아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번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4,5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보리 사건」의 시마다 라고 하는 사람은 34년간을 사형수로서 복역하다가 과학적 검증방법이 도입되어서 그 사람이 과연 살인을 했느냐 하는 것이 밝혀진 바람에 34년만에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제가 시마다라고 하는 분을 작년에 가서 만났는데 머리가 다 벗겨진 노인이었습니다. 20대에 들어가서 60대에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받은 형사보상금은 1억5천 정도였습니다. 그 보상액의 반은 자신의 여생을 위해 쓰고 나머지 반은 사형폐지를 위해 직접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마다라는 사람이 어린애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체 감정 방법에 대한 좀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감정 방법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이 사건은 산 사람에게 흠집을 낸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흠집을 낸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죽은 시체에다 흠집을 냈을 때 하고 살아 있는 산 사람에게 흠집을 낸 것을 구별하는 감정방법이 상당히 발전되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로 방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진범은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4년 만에 나오면서 "나는 국경일 하고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죽었습니다(국경일과 일요일에는 집행을 얹거든요). 그래서 머릿도 다 빠졌지요. 아침에 간수의 신발 소리가 들리면 이제 날 잡으러 오는구나!" 하며 지

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날은 국경일과 일요일, 즉 그날은 자기가 사는 날이죠. 그에게 있어서 나머지 날은 매일 죽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극형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재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문제를 써 냈습니다. 물론 오판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제도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억울함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용성이나 제도의 목적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5년 집행을 유예해 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그 사람의 성향을 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택동의 부인되는 강청이 그사람도 사형선고가 됐는데 그 집행유예로 해서 무기로 감형됐고 그리고 자살했죠.

하여튼 그런 집행유예제도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형 그 자체는 인도적으로나 또는 생명의 일회성, 도덕성,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안 될 제도고 오히려 가령, 징역 100년을 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또는 감형이나 사면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추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제도에 대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같은 분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 그것을 누가 끊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 쪽에서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권력을 가진 나라에서 끊어야 할 것이냐? 그 악의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마땅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 쪽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살인범과, 흉악범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좋은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유인물에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면은 정치가들은 이점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또 저와 절친한 친구 중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와관련된 이런 사형폐지운동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지면에 나가면 그날 아침에 제게 육설전화도 옵니다. 또 격려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되짚어 볼수록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깊이 통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유와 동기를 혼동해서는 않된다 하는 것을 저의 오늘 대화의 마지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기 복역자가 바라 본 행정 및 교정교화의 실과 허

서준식

저는 이런 자리에 나오는데 대단히 적합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17년이라는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전과 2범입니다. 작년에 또 6개월 동안 갔다왔기 때문에 17년이 아니라 17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산 셈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소년 시절에는 대단한 민족의식의 각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우리 나라에 가고 싶다. 우리 동포들과 함께 살고, 우리 동포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기쁨, 슬픔 등,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967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자란 저는 우리말을 한 마디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울 대학교 재학 중에 약간의 경술한(그것에 대해 저 자신은 전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포들에게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술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을 통해 몰래 북한을 다녀온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에 다녀왔다고 하면 무조건 간첩으로 여겨졌고,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해서 저는 7년형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왜 7년 만기에 못나왔는가 하면 1975년에 사회안전법이라는 법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법률은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도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무엇인가는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형벌의 경우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예방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먼저 있는 것이고 행위가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먼저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법은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법부의 재판없이 행정부의 결정 만으로 따라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기 때 저는 사회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청주보안감호소로 갔고 거기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 17년을 살다가 1988년에야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안감호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 하는 판정을 법무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이라 하는 것을 측정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에 의한 결정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자의적인 결정을 했는가?

『사상전향』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사상전향이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기 때